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상법 개정 취지 반영 및 주주위원회 신설 등 〉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049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 현 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4
2. 대표이사 선임 및 연임 절차 변경	15
3. 주주위원회 신설 및 임원후보추천위원 추천 등 주주 참여 강화 ...	21
4. 감사위원의 분리 선임 확대	30
5.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 청구 요건 완화	3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홍배의원 등 30인
2. 제 안 일 : 2026. 4. 2
3. 회 부 일 : 2026. 4.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금융회사는 자본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공공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일반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강화된 기업지배구조 개선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와 이사회 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집중투표 배제를 금지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

화되었으나,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율에는 이러한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

또한 금융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약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주제안 독립이사 후보에 대한 보호 장치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율에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감사위원 선임 방식을 강화하는 한편,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집중투표 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대형금융회사(대형금융회사는 법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름. 이하 같음)의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주주총회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아울러 대형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로 구성되는 주주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과정에 주주 참여를 보장하고 금융회사 이사회와 주주 간의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함(안 제2조제4호 등).

나. 대형금융회사 대표이사의 최초 선임은 주주총회 결의로 하고 대표이사의 연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다. 대형금융회사는 주주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함(안 제17조제2항).

라. 주주제안 독립이사후보를 별도 의제나 안건으로 분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7조제7항 신설).

마. 주주제안 독립이사후보에 대한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허위 공시 및 차별적 정보제공 행위를 금지함(안 제17조제8항 신설).

바.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에 대해서는 모두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사.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 청구 요건을 완화함(안 제33조제7항 신설).

아. 대형금융회사는 의결권 있는 주식 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는 주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안 제2조제4호 등)

□ 개정안은 금융회사에 두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이사”란 사내이사, <u>사외이사</u>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3. ----- <u>독립이사</u> ----- ----- -----.
4. “ <u>사외이사</u> ”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써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사람을 말한다.	4. - <u>독립이사</u> ----- ----- ----- -----.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제6조(<u>사외이사</u> 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u>사외이사</u> 가 될 수 없다. 다만, <u>사외이사</u> 가 됨으로써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는	제6조(<u>독립이사</u> 의 자격요건) ① -- ----- ----- <u>독립이사</u> ----- ----- <u>독립이사</u> ----- ----- -----

현행	개정안
사람은 <u>사외이사</u>가 될 수 있다. 1. ~ 6. (생략) 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u>사외이사</u>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u>사외이사</u>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8. 그 밖에 금융회사의 <u>사외이사</u>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금융회사의 <u>사외이사</u>가 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③ 금융회사의 <u>사외이사</u>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2조(이사회 구성) ① 금융회사는 이사회에 <u>사외이사</u>를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u>사외이사</u>의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대	-----<u>독립이사</u>-----. 1. ~ 6. (현행과 같음) 7. -----<u>독립이사</u>----- ----- <u>독립이사</u>----- ----- 8. -----<u>독립이사</u>----- ----- ----- ----- ----- ② -----<u>독립이사</u>----- ----- ----- ----- ----- -----. ③ -----<u>독립이사</u>----- ----- ----- ----- -----. 제12조(이사회 구성) ① ----- -----<u>독립이사</u>----- -----. ② <u>독립이사</u>----- -----.

현행	개정안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u>사외이사</u>로 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u>사외이사</u>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u>사외이사</u>의 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사원총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13조(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① 이사회는 매년 <u>사외이사</u>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u>사외이사</u>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u>사외이사</u>를 대표하는 자(이하 “<u>선임사외이사</u>”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u>선임사외이사</u>는 다음 각 호의	----- ----- -----<u>독립이사</u>-----. ③ -----<u>독립이사</u>----- -----<u>독립이사</u>----- ----- ----- ----- ----- ----- ----- ----- ----- ----- ----- ④ <생략> 제13조(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① -----<u>독립이사</u>----- -----. ② ----- -----<u>독립이사</u>----- ----- ----- ----- -----<u>독립이사</u>----- <u>선임독립이사</u>----- -----. ③ <u>선임독립이사</u>-----

현행	개정안
업무를 수행한다. 1. <u>사외이사</u> 전원으로 구성되는 <u>사외이사회의</u>의 소집 및 주재 2. <u>사외이사</u>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u>사외이사</u>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④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은 <u>선임사외이사</u>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u>사외이사</u>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대표는 <u>사외이사</u>로 한다. 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u>사외이사</u>,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보를 추천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 ③ (생략)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u>사외이</u>	-----. 1. <u>독립이사</u>-----<u>독립이사회의</u>----- 2. <u>독립이사</u>----- 3. <u>독립이사</u>----- ④ -----<u>선임독립이사</u>----- -----.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독립이사</u>-----. ⑤ -----<u>독립이사</u>-----. 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u>독립이사</u>-----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u>독립이</u>

현행	개정안
<u>사</u>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 33조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u>사외이사</u>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⑤·⑥ (생략) <신설> <신설> 제18조(<u>사외이사</u>에 대한 정보제공) ① 금융회사는 <u>사외이사</u>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u>사외이사</u>는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① (생략) ②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u>사외이사</u>가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③·④ (생략)	<u>사</u>----- ----- ----- -----<u>독립이사</u>----- -----.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생략> ⑧ <생략> 제18조(<u>독립이사</u>에 대한 정보제공) ① -----<u>독립이사</u>----- ----- ----- -----. ② <u>독립이사</u>----- ----- ----- -----. -----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독립이사</u>----- -----. ③·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⑤ 금융회사는 감사위원이 되는 <u>사외이사 1명 이상</u>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⑥ ~ ⑨ (생략) ⑩ 상근감사 및 <u>사외이사</u>가 아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의 상근감사 또는 <u>사외이사</u>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재임(在任)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제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상근감사 또는 <u>사외이사</u>가 아닌 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 제20조(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① ~ ③ (생략) ④ 감사위원(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를 말한다)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u>사외이사</u>”는 “감사위원” 또는 “감사”로 본다. 제23조(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등의 특례) ① 금융지주회사가 받	⑤ ----- -<u>독립이사</u>----- ----- -----. ⑥ ~ ⑨ (현행과 같음) ⑩ -----<u>독립이사</u>----- ----- ----- -- . ----- -----<u>독립이사</u>----- ----- ----- -----<u>독립이사</u>----- -----. 제20조(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u>독립이사</u>----- -----. 제23조(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등의 특례) ① -----

현행	개정안
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u>사외이사</u>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u>독립이사</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u>선임 사외이사</u> 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 <u>선임 독립이사</u> -----
5.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u>선임 사외이사</u> 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한 자	5. ----- <u>선임 독립이사</u> ----- -----
6. (생략)	6. (현행과 같음)
7.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u>사외이사</u> 로 두지 아니한 자	7. ----- ----- <u>독립이사</u> ----- -----
8. ~ 10. (생략)	8. ~ 10. (현행과 같음)
1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주 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u>사외이사</u> 후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자	11. ----- ----- ----- <u>독립이사</u> ----- --
12. ~ 26. (생략)	12. ~ 26.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 2의3. (생략)	1. ~ 2의3. (현행과 같음)
2의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u>사외이사</u> 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	2의4. ----- <u>독립이사</u> -----

현행	개정안
장으로 선임하면서 그 사유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 ----- ----
2의5. ~ 10. (생략)	2의5. ~ 10.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지난 2025. 7. 22. 개정되어 2026. 7. 23. 시행 예정인 「상법」¹⁾에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업무집행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였음. 「상법」상 독립이사는 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함.

1) 「상법」

제542조의8(독립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2.>

② (생략)

③ 제1항의 상장회사는 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항의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2.>

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25. 7. 22.>

⑤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독립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의6제1항·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추천한 독립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25. 7. 22.>

[본조신설 2009. 1. 30.]

[제목개정 2025. 7. 22.]

[시행일: 2026. 7. 23.] 제542조의8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상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음.

<현행법과 개정 상법 및 개정안 비교>

구분	개정 상법	현행 지배구조법	개정안
사외이사 (독립이사)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대신 <u>독립이사 개념 도입</u>	금융회사는 사외이사를 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은 이사 총수의 과반수(및 3명 이상)	대규모금융회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 3명이상)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자산 5조원 이상 금투·보험 등	
	자산 2조원 미만 상장기업은 <u>이사 총수의 1/3 이상을 독립이사로 구성</u>	일정규모 금융회사는 이사 총수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 자산 3천억원~5조원 금투·보험 등	
	* 상법 제542조의8	* 지배구조법 제12조 등	

- 다만, 「상법」에서는 일반 주식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사외이사라는 용어를 모두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있음. 또한, 개정된 「상법」의 규율 대상은 ‘상장회사’이나, 개정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회사²⁾

에는 비상장회사도 포함됨. 이에 따라 「상법」과 용어상·실무상 다소 혼란이 생길 소지도 있으므로, 독립이사를 두어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는 방안(현행법³⁾상 시행령⁴⁾에서 자산 규모 등을 고려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 (이하 생략)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회사의 국외 현지법인(국외지점을 포함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이하 “겸영금융투자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
- ②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금융회사”라 한다)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제5조, 제7조, 제4장 및 제7장을 적용하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 ③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 2.>

1.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4. 제22조에 따른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에 관한 사항
- 4의2. 제22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제33조에 따른 소수주주권(「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소수사원권을 말한다)의 행사에 관한 사항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중개회사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6.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7.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8.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대표·부

하여 이사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등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되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그 밖에 독립이사의 개념에 관해서도 「상법」과 동일하게 이 법에서 다시 정의할 필요성도 있어 보임.

2. 대표이사 선임 및 연임 절차 변경 (안 제12조제4항 신설)

-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최초 선임은 주주총회 결의로, 연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임.

대표·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국내지점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5., 2017. 10. 17.>

1.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7천억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그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 같은 법 제85조제5호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이하 “투자일임재산”이라 한다) 및 신탁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형신탁의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4.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
5. 그 밖에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현행	개정안
제12조(이사회 구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2조(이사회 구성) ① ~ ③ (생략) ④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대표이사(「상법」에 따른 집행임을 둔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을 말한다)는 같은 법 제389조 제1항 및 제408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8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하되, 대표이사의 연임은 같은 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u>

□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이사회 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⁵⁾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금융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 1. 2.>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내부통제위원회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제2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점검·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

④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 2.>

⑤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 <개정 2024. 1. 2.>

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보를 추천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금융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

서 이사회 결의(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로 의결)로 선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의 일반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의결)로 선임⁶⁾하고 있음. 대표 이사의 연임 또한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의 일반결의로 이루어짐.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장기간 연임으로 권한이 집중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금융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대형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최초 선임 시에는 주주총회의 일반결의로, 연임 시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

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제2항과 제16조제4항·제5항은 최초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를 구성하는 금융회사가 그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 2.>

6)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2025. 7. 22.>

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 5. 20.>

[제목개정 2025. 7. 22.]

[시행일: 2027. 1. 1.]

제389조(대표이사) ①회사는 이사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 12. 12.>

제391조(이사의 결의방법) ①이사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②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 12. 31., 2011. 4. 14.>

③제368조제3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전문개정 1984. 4. 10.]

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의결)⁷⁾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 이와 관련해서는 동 개정안 외에도,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임기를 연임기간을 포함하여 총 6년으로 정하는 개정안⁸⁾,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의 연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⁹⁾ 등이 발의되어 있음.

<대표이사 선임·연임 관련 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	김현정의원안	신장식의원안	박홍배의원안
적용 대상	모든 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선임	이사회 결의(상법 §389) 또는 주주총회 결의(정관에서 정한 경우)			최초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일반결의)
연임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정관에서 정한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	주주총회 특별결의
임기	3년		총6년(연임 포함)	-
연임 제한	-	-	1회만 허용	-

7) 「상법」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8) 2026. 3. 31.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973

9) 2026. 2. 20.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898

□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선임 및 연임에 관한 통제 강화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이사회 구성·운영에 대한 지배력이 큰 상황에서 대표이사의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도 그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 이로 인해 대표이사의 장기간 연임과 지배력 강화 등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의 선임·연임 과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음.

반면, 대표이사의 선임 및 연임 등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자율적인 영역이라는 점(현행 「상법」상 대표이사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회사가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지난 2026. 3. 23. 대표이사를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하고 2회 이상 연임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받도록 정관을 개정하였음), 대표이사가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연임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음.

최근 4대 금융지주회사의 연임 관련 주주총회 결과를 보면, 80% 이상의 높은 찬성률로 연임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¹⁰⁾ 대표이사 연임에 관한 의결 요건을 강화하더라도 실제 연임 방지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 우려도 있음.

10) 최근 4대 금융지주 주주총회(사내이사 선임결의) 결과(연임 기준)는 다음과 같음(금융위원회 자료).
(KB) 1회 99%(2017년), 2회 97%(2020년)
(하나) 1회 85%(2018년), 2회 82%(2021년),
(신한) 1회 56%(2020년), 1회 88%(2026년)
(우리) 1회 99%(2026년)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과 금융회사의 경영상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금융지주회사는 총 10개사¹¹⁾이고, 그 중 8개 은행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관련 현황은 다음과 같음.

<은행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관련 통계>

회사	성명	임기	연임 여부
농협	이찬우	'25.2~'27.2	최초선임
하나	함영주	'22.3~'28.3	연임 1회
신한	진옥동	'23.3~'29.3	연임 1회
우리	임종룡	'23.3~'29.3	연임 1회
KB	양종희	'23.11~'26.11	최초선임
IM	황병우	'24.3.~'27.3.	최초선임
JB	김기홍	'19.3.~'28.3.	연임 2회
BNK	빈대인	'23.3.~'29.3.	연임 1회

* 자료: 금융위원회

11) (은행지주) KB, 신한, 하나, 우리, NH, iM, BNK, JB, (非은행지주) 한국투자, 메리츠

3. 주주위원회 신설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등 주주 참여 강화(안 제17조제2항 및 안 제33조의2 신설 등)

□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 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 및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는 주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안 제33조의2 신설), 주주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17조제2항).

또한, 주주제안 독립이사후보를 별도 의제나 안건으로 분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안 제17조제7항 신설), 주주제안 독립이사후보에 대한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허위 공시 및 차별적 정보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임(안 제17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u>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보</u> 를 추천한다.	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 ----- <u>독립이사</u> ----- ----- ----- -----.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	② ----- ----- ----- ----- <u>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제33조의2에 따른 주주위</u>

현행	개정안
③ (생략)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u>사외이사</u>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u>사외이사</u>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⑤·⑥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위원회가 추천한 위원을 3명 이내로 포함하여야 한다.</u> ③ (현행과 같음) ④ -----<u>독립이사</u>----- ----- ----- -----<u>독립이사</u>----- -----. ⑤·⑥ (현행과 같음) ⑦ 금융회사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으로 추천된 <u>독립이사후보</u>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다른 <u>독립이사후보</u>와 분리하여 별도의 의제나 안건으로 주주총회에 상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으로 추천된 <u>독립이사후보</u>에 대하여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u>제33조의2(주주위원회) ① 대통령령</u>

현행	개정안
	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주주위원회를 둔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가 추천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주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우리사주조합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조합의 계정과 조합원의 계정을 합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주주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 현행법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주주총회, 이사회, 경영진, 내부통제 제도 등으로 구성되고, 이사회는 경영진의 회사 운영에 관한 감독 및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구임. 그러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이사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주주의 권리 보호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한 주주위원회를 두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주주위원회가 추천한 위원을 3명 이내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소수주주의 참여를 확대하고,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또한, 주주위원회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주주가 추천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우리사주조합¹²⁾

12)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구성되는 우리사주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①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제34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해당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②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2.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하 “지배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이하 “수급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 가.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소속 근로자 전원의 과반수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 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 다. 해당 지배관계회사 또는 해당 수급관계회사 자체에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자체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될 것. 다만, 제47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라 주주위원회가 구성·운영될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소수주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실효적인 통로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개정안은 주주위원회가 추천하는 최대 3명의 위원을 임원후보추천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 내에 설치하는 위원회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들로 구성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감사위원 등 임

②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37조에 따라 배정받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1.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
2.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주주.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후 소속 회사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게 되는 경우의 그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
4. 그 밖에 근로기간 및 근로관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우리사주조합원은 자유로이 우리사주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은 탈퇴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근로자의 소속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제37조에 따라 배정받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변경 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1. 지배관계회사로의 편입 또는 지배관계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2. 수급관계회사로의 편입 또는 수급관계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원후보를 추천하고, 금융회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게 됨.

현재의 구조 하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들이 실질적으로 경영진이나 대주주 등의 영향에서 독립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소수주주 등의 관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형식 및 절차상으로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전체 주주를 대표하여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어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또한 이사회의 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이사회에 대해서는 경영진뿐만 아니라 일부 주주들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일부 주주를 대표하게 되는 주주위원회에 임원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대표성, 자율성 등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둘째, 개정안은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주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 추천 외에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주주의 대표로서 주주들의 의사를 대

신하여 경영진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기능은 이사회에서 수행하는데, 개정안과 같이 이사회와 별도로, 주주들을 대표하는 주주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이사회 역할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

- 셋째, 개정안은 주주위원회 위원으로 우리사주조합¹³⁾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 근로자의 단체이면서 동시에 주주의 지위도 가지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의 성격을 고려할 때, 회사 내부 구성원의 입장 및 업무에 관한 전문성 등이 회사의 의사결정에 활용되고 반영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우리사주조합 또한 주주의 일부에 해당하는데, 우리사주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주주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른 주주와의 형평성 측면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13)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주택사업자”란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4. “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5. “우리사주”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 개정안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일부 주주를 대표하는 주주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어 전체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회와의 기능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¹⁴⁾이고, 은행연합회는 현행 제도로도 소수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참고로,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에 관한 현행법상 규정을 살펴보면,

법 제6장(소수주주의 권리행사의 특례) 제33조¹⁵⁾에서 소수주주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주식 0.

14)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통해 세부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음.

1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소수주주권)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③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같은 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2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같은 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⑥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주주가 「상법」 제403조(같은 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그 각 항에서 규정하는 「상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1만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제안권¹⁶⁾을 행사할 수 있음. 이는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
주제안권¹⁷⁾ 행사 기준(3%), 「상법」 제542조의6에 따른 상장회사 주
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기준(일반 상장회사 1%, 대형 상장회사 0.5%)보

16)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회에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②제1항의 주주는 이사회에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
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4. 5. 20.>

③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
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7) 「상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제542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
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5조(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
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
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2조(제408조의9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⑥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
403조(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⑦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
406조의2(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
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⑧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된 것보다 단기의 주식 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2조의7제2항에서 “주식을 보유한 자”란 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권 행사
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9.>

⑩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542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다른 절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29.>

[본조신설 2009. 1. 30.]

다 완화된 요건임. 또한, 법 제17조제4항¹⁸⁾에 따르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하는 후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4. 감사위원의 분리 선임 확대(안 제19조제5항)

□ 개정안은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전부에 대해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19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① (생략)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u>사외이사</u> 가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② ----- <u>독립이사</u>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금융회사는 감사위원이 되는	⑤ -----

1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보를 추천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금융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제2항과 제16조제4항·제5항은 최초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를 구성하는 금융회사가 그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 2.>

현행	개정안
<u>사외이사</u>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⑥ ~ ⑨ (생략) ⑩ 상근감사 및 <u>사외이사</u>가 아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의 상근감사 또는 <u>사외이사</u>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재임(在任)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제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상근감사 또는 <u>사외이사</u>가 아닌 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	~~-독립이사-~~ ~~-----~~ ~~-----.~~ ⑥ ~ ⑨ (현행과 같음) ⑩ ~~-----~~<u>독립이사</u>~~-----~~ ~~-----~~ ~~-----~~ ~~-----.~~ ~~-----~~<u>독립이사</u>~~-----~~ ~~-----~~ ~~-----~~ ~~-----~~<u>독립이사</u>~~-----~~ ~~-----.~~

○ 지난 2025. 9. 9. 개정된 「상법」 제542조의12제2항¹⁹⁾(2026. 9. 10. 시

19) 「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2명(정관에서 3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5. 9. 9.>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개정 2020. 12. 29.>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20. 12. 29., 2025. 7. 22.>

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⑥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447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

행 예정)에서는,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 감사위원 중 2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종전 최소 1명 분리 선임).

이는 「상법」 제542조의12제4항에 따라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분리 선임하는 경우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므로, 분리선임 대상이 되는 감사위원회위원을 확대함으로써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다만,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하여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법」의 개정 취지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현행법 및 개정 상법 비교>

구분	개정 상법	현행 지배구조법	개정안
감사 위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 기업은 감사위원회 설치	대규모* 금융회사는 감사 위원회 설치(3인 이상, 사외 위원 1인 이상)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전부 분리 선출

의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신설 2020. 12. 29., 2025. 7. 22.>

⑧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6. 9. 10.] 제542조의12

구분	개정 상법	현행 지배구조법	개정안
분리 선출	(3인 이상, 사외이사 2/3이상) 및 최소 2인은 분리 선출 (최대주주는 감사위원 선임· 해임시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3% 초과 의결권 제한) * 상법 제542조의12	이사 2/3이상) 및 1인 이상 은 분리 선출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회사, 자산 5조원 이상 금투·보험 등 (최대주주는 감사위원 선임· 해임시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3% 초과 의결권 제한) * 지배구조법 제19조 등	

○ 다만, 개정안의 내용과 개정 「상법」의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우선, 개정안은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전부를 분리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상 감사위원은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그 중 사외이사가 2/3 이상이어야 하므로, 개정안에 따르면, 최소한 2명 이상의 독립이사를 분리선임하여야 함. 감사위원회가 3명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개정 「상법」의 내용과 동일하나, 감사위원회가 3명보다 많은 수의 이사로 구성되는 경우 분리선임되는 이사의 수가 개정 「상법」보다 더 많아짐.

또한,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규정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만 적용되나, 개정안은 비상장 금융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 전체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어 그 대상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음.

○ 위와 같이 개정안의 내용과 개정 「상법」의 내용이 다소 상이한데,

일반회사와 달리 주주뿐만 아니라 예금자 및 투자자, 보험계약자 및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개정 「상법」보다 규율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는 반면, 규제의 형평성 측면을 감안하여 이를 균형 있게 반영할 필요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은행연합회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 「상법」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에 대해 분리선임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5.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 청구 요건 완화(안 제33조제7항 신설)

□ 개정안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자는 「상법」에 따른 집중투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33조(소수주주권) ① ~ ⑥ (생략) <u><신설></u>	제33조(소수주주권)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대통령령으</u>

현행	개정안
⑦ (생략)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그 각 항에서 규정하는 「상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2조의2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⑨ -----제7항----- ----- ----- ----- -----.

현행 「상법」 제382조의2²⁰⁾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집중투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개정된 「상법」에서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도 배제할 수 없도록 의무화

20) 「상법」

제382조의2(집중투표) ①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 목적을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8.>

③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⑤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⑥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하였음²¹⁾).

개정안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집중투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개정 「상법」 보다 집중투표 청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임.

집중투표제는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를 후보자 1명 또는 수명에게 집중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가 이사 선임을 위한 표결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이는 제도로서, 개정안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취지임.

특히 동시에 선임하게 되는 이사의 수가 많을수록 소수주주의 의결권이 집중되는 효과가 크고, 선임하려는 이사의 수가 적을 경우 집중투표제의 효과는 감소하게 되는데, 개정안은 안 제17조제7항²²⁾에서 주주

21) 「상법」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① 상장회사에 대하여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제542조의8제5항에서 같다)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 <개정 2025. 9. 9.>

④ 삭제 <2025. 9. 9.>

[본조신설 2009. 1. 30.]

[시행일: 2026. 9. 10.] 제542조의7

22) 안 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⑦ 금융회사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으로 추천된 독립이사후보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다른 독립이사후보와 분리하여 별도의 의제나 안건으로 주주총회에 상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안으로 추천된 독립이사 후보를 다른 후보와 분리하여 안건 상정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이사 선임 시 소수주주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집중투표제의 소수주주 대변 효과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집중투표제는 1주 1의결권 원칙²³⁾의 예외로 인정되는 제도인만큼, 청구요건을 「상법」과 달리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대한 규율 강화 필요성과 규제의 형평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개정안에서는 「상법」 제382조의2에 따른 집중투표 청구권 행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의 규정이 적용되는바, 대규모 상장회사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개정안 제33조와 「상법」 제542조의7 중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불분명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상법」이 적용될 경우 주식보유조건 1%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주식보유조건 0.5% 및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배제 허용),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도 있어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상법」과 달리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23) 「상법」

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은행연합회는 금융회사의 규제 적응을 위한 부담 및 시장의 불확실성 우려 등을 고려하여 개정 「상법」의 입법효과에 대한 평가가 선행된 이후에 집중투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04